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22일, 윤재옥의원 등 261인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토교통위원회(2023.11.1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3.12.5.)

상정·축조심사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3.12.19.)

상정·축조심사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3.12.21.)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3.12.21.)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윤재옥)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영호남 간 여객·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지원)

1. 제정안의 취지 및 제안배경

가.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이름을 각각 대구광역시의 옛 이름(달구벌)과 광주광역시의 순우리말 이름(빛고을)을 따서 명명하고 있음.

제정안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입법 배경

1)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경위

동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으로 광주송정과 서대구간 일반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기 위해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동 사업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1년 제2차 국가철

도망 구축계획,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에 모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음.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세부 추진경위】

- '06. 3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 '09.12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철도공단)
- '11. 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 '16. 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
- '17. 4 ~ 7 : 「지역공약사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반영
- '17. 7 :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 협의회 출범식(광주시)
 - * 구성 : 대구시장, 광주시장 및 의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21명), 시민대표 등 46명
- '18.12 : 국토부 사전조사 용역비 반영(5억원, '19년 국회예산 심의과정)
- '20. 6 : 사전타당성조사 완료(국토부)
- '21. 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21.12 : 사전타당성조사 착수(철도공단, '21.12~'23.12)
- '23. 8 :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261명 국회의원 동참)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국

2017년에는 광주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 협의회 출범식이 이루어졌고, 국토교통부가 2020년 6월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동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광주~대구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반영되어있으며, 사업 구간은 광주송정에서 서대구까지임. 단선전철을 198.8km 연장으로 건설 시 총 사업비는 4조 5,158 억원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내용 발췌】

3. 부문별 사업계획

[2] 과제별 사업계획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① 신규추진 사업

- (일반철도 고속화) 신설노선인 광주~대구 및 평택~부발선과 동해선·전라선·호남선 등 기존선 고속화 개량사업, 원주연결선 등 <6개 사업, 124조원>

구분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향남~경부고속선 ¹⁾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 ~ 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 ~ 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계			424.7	129,919

※ 자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췌

2020년 5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¹⁾를 실시하였음. 당시 경제성 향상을 위해 기존선을 활용²⁾하는 방안, 단거리 수요가 많은 대구권(합천-동대구)·광주권(광주송정-남원)에 각각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고, 총 5개 노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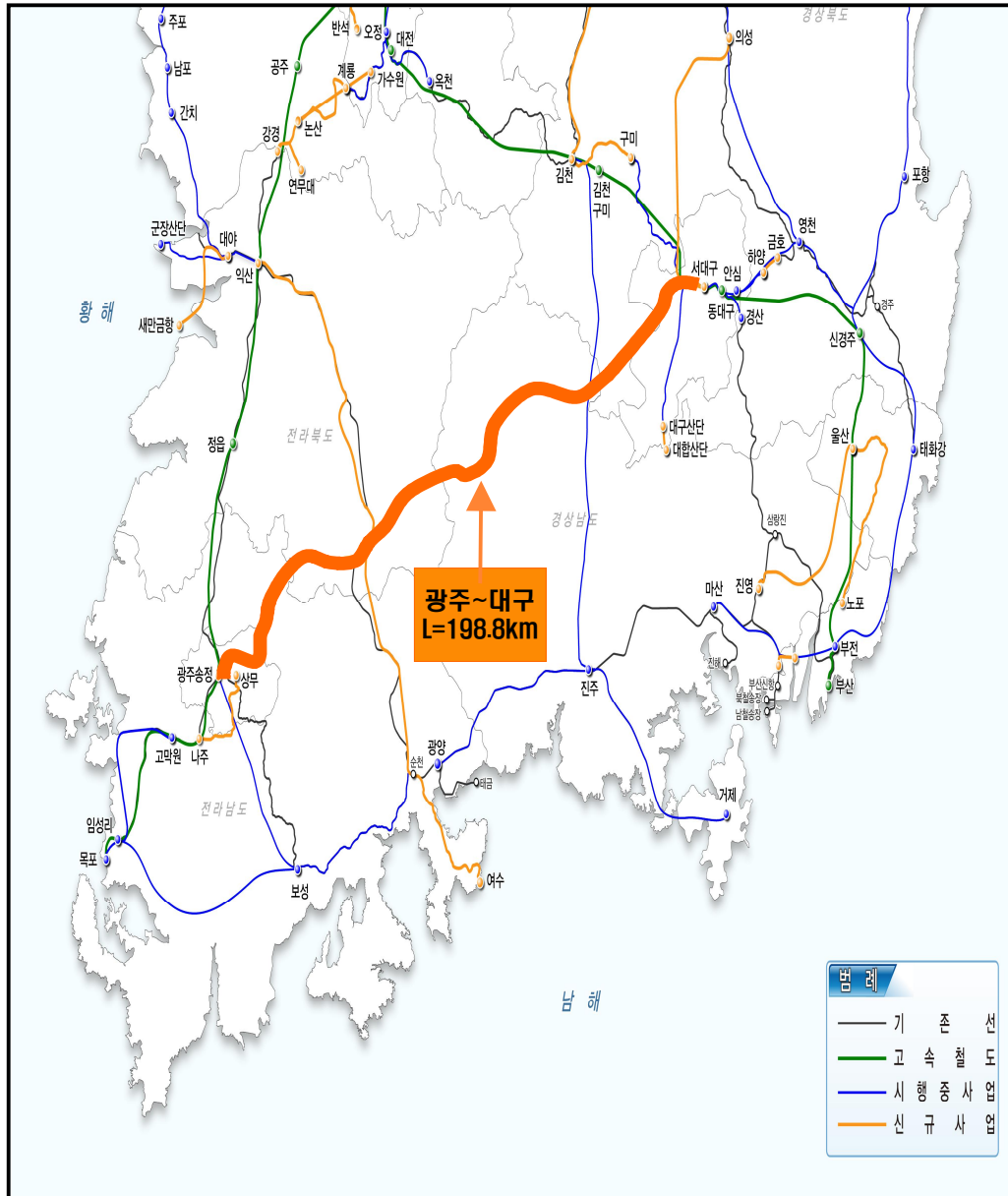
1) ○ 용역개요

- 용역내용 : 대구~광주 191.6km 단선전철 신설
- 용역기간 / 금액 : '19.6.1 ~ '20.6.5 / 250백만원
- 수행기관 : (학술) 아주대산학협력단, (기술) ㈜선구ENG, 피토우

2) 광주선 10.4km, 전라선 7.3km, 대구산업선 17.7km, 경부선 9.3km

그 결과 제시된 대략적인 노선안은 다음과 같음.

【2020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른 노선 위치도】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국

다. 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1) 기획재정부

제정안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특별법에 예타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예타면제를 규정한 현행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과 중복됨.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현행 국가재정법 규정으로도 예타 면제가 가능함.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 예타면제 규정은 제한적·열거적으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됨.

타 지역 SOC 개발사업으로 과급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58.8조원 규모의 총 44개 신규사업(노선 1,448km)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타지역 철도사업 등도 특별법을 통한 예타면제를 추진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국토교통부

제정안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관련,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개발부담금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감면규정 불필요함. 제정안 제15조에서 감면하려는 사업이 철도건설사업 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제도관리 일원화 및 체계 유지를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에 따라 소관법령(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안전부

제정안 제13조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관련, 동 법안의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위한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임.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령에서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4) 국방부

제정안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동 법과 유사법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는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달빛고속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와 다르게 20일로 축소하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

또한 동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등을 위한 협의 요청시 국방부는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조항에서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고 의견을 통보하는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있음.

5) 환경부

제정안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중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생태계 복원목적 및 국방목적 사업만 예외를 인정한바,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또는 제외규정 신설시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타법령에서 감면 또는 제외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며, 감면(제외)를 위해서는 「부담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임.

제정안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중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관련,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자동차는 그 성격상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 이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며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사업시행과 직접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6) 산림청

개정안 제11조 인·허가등의 의제 관련, 철도사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행위이며, 해당 목적사업을 완료한 구역에 한하여 보전산지 해제 등(이하 ‘보전산지 해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계획적인 산지의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함.

현행 「산지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목적사업이 있는 산지는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한하여 보전산지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고시만으로 보전산지의 변경과 해제 또는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가 의제된다면 사업구역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산지관리 혼란이 우려됨.

2.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은 4개의 장에 총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지원 등”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에 관한 특례, 인·허가등의 의제, 주변지역개발사업, 달빛고속철도건설
추진단,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의 유치, 지역기업의 우대 등 달빛고
속철도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그 밖에 “제3장 보칙”에서는 보고·검사, 시정명령, 허가 등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 청문, 권한의 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제4장 벌칙”에서는
명령 등의 위반죄,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방향)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 정 안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제13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제14조(재정지원)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보칙

제21조(보고·검사 등)
제22조(시정명령 등)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24조(과징금의 부과)
제25조(청문)
제26조(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제27조(명령 등의 위반 죄)
제28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제29조(업무방해 죄)
제30조(양벌규정)

3. 총괄: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관한 검토

제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임. 특히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부터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비로소 신규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음.

그러므로 제정안 심사 시에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개별 철도 사업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별 사업의 실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개별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이하 “SOC”) 사업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가 있음.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2002년부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필요성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되어 당초 김해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국가적·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여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임³⁾.

3)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570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5759호) 검토보고서 p.28

②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⁴⁾의 경우 군 공항의 비행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대구 군 공항 이전, 민간공항 이전, 이전주변지역 지원, 종전부지 개발 등 여러 사업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 중 하나임.

두 입법례는 제한적인 입지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공항 분야”의 입법례라는 공통점이 있음.

제정안의 경우 같은 SOC 사업에 관한 법안이기는 하나 “철도 분야”라는 점에서 이와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 현재 “철도 분야”에 있어서 개별 노선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한 입법례는 없음. 제정안과 같이 개별 사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 향후 위와 같이 유사한 개별 노선 사업에 대한 법 제정 요구가 증가할 여지가 있음. 기존의 법률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도 보임.

다만,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이고, 동서 지역 철도망의 구축을 통해 단일 도시권 형성에 기여하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도 가능함.

4) 국토교통위원회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4078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 제1장 총칙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기본방향(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 정 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고속철도”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기 위해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2. “달빛고속철도 건설”이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 및 첨단화 추진 2. 철도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정안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호남 지역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정안의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서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달빛고속철도” 라는 노선명의 사용 여부

제정안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이름을 각각 대구광역시의 옛 이름(달구벌)과 광주광역시의 순우리말 이름(빛고을)을 따서 명명하고 있음.

다만, 위와 같이 행정 구역 상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지칭을 통해 철도 노선의 이름을 명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현행 국토교통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르면, 노선명은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중 첫 글자 또는 첫 두 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하도록 규정(예시 : 수인선)하고,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5조(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지명 중 첫 글자 또는 첫 두글자를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노선명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리적 명칭(예시 : 내륙선, 서해선)이나 행정구역 명칭(예시 : 광주선, 과천선) 또는 특정 명칭(예시 : 인천국제공항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노선의 명칭은 전체 노선에 대해 부여하되, 단계별로 개통하는 경우에는 노선명과 우선 개통구간을 병행하여 표기(예시 : 경강선(성남~여주))한다.

- ③ 기·종점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 남쪽에서 북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배열하되, 경합이 발생할 때에는 남쪽에서 북쪽 사용이 우선(예시 : 수인선)한다. 다만, 서울이 기점 또는 종점 노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노선명(예시 : 경부선, 경인선)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기존의 노선이 일부 연장되거나 개량사업 등으로 노선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의 노선명은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 등을 위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점 및 종점 등이 현저히 변경되어 여객의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된 노선 등은 다른 노선의 일부구간을 중복 사용하여 하나의 노선명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동 사업이 “광주~대구 일반철도 사업”이라는 노선명으로 명시된바,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동 철도의 노선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① 제정안과 같이 “달빛고속철도”로 명명하는 방안, ②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같이 “광주~대구 일반철도(또는 고속철도)”으로 명명하는 방안, ③ 공식적인 노선명은 “광주~대구 고속철도(또는 고속철도)”로 하되 달빛고속철도라는 별칭⁵⁾을 사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음.

2) 철도 유형(고속철도/일반철도) 및 사업규모(복선/단선)를 제정안에 명시할 지의 여부 검토 필요

제정안은 제명,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정의규정을 포함하여 제정안 전체에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로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제3조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의 기본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호는 달빛“고속철도”를 “복선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를 규

5)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정 철도 노선에 대한 별칭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건설법」⁶⁾에 따르면, 철도의 유형을 운행 시속에 따라 구별하는 경우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로 구별하고 있음. 이 중 “고속철도”는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의미함.

「철도사업법」⁷⁾ 및 동법 시행규칙의 정의에서는 철도를 운행속도에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7) 「철도사업법」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
 - 가. 간선(幹線)철도
 - 나. 지선(支線)철도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

- 가. 고속철도노선
- 나. 준고속철도노선
- 다. 일반철도노선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

따라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로 구별하고,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을 “고속철도 노선”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노선 지정 시에 「철도사업법」상의 고속철도에 한정하여 고속철도 노선을 지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가 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에서 “고속철도”로 명시함에 있어, 「철도건설법」이나 「철도사업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입법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동 사업을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동 사업을 “일반철도”로 하면서 이에 더해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므로 제정안에서 같이 “고속철도”를 “복선화”하여 철도를 건설하려는 경우 동 노선의 수요, 선로용량, 건설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입법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는 동 사업이 수요 등을

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 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300km/h 이상

2. 준고속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이상 300km/h 미만

3. 일반철도차량: 최고속도 200km/h 미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참고 신규사업 현황 (총 44개, 1,448km, 58.8조원)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① 운영효율성 제고사업					
고속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광명	복선전철	26.6	22,285
		광명~평택	2복선전철화	66.3	56,942
일반	문경·점촌선	문경~점촌~김천	단선전철	70.7	11,437
	경북선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55.2	2,709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국제공항	급행화	63.9	4,912
광역	분당선	왕십리~청량리	단선전철	1.0	820
소계(6개 사업)				283.7	99,105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고속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화성~항남~경부고속선	복선전철(직결선)	7.1	5,491
일반	광주~대구	광주송정~서대구	단선전철	198.8	45,158
	평택부발선	평택~부발	단선전철	62.2	22,383
	원주연결선	원주~만종	복선전철(직결선)	6.6	6,371
	동해선	삼척~강릉	단선전철(고속화)	43.0	12,744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고속화)	89.2	30,357
	호남선	가수원~논산	복선전철(고속화)	17.8	7,415
소계(7개 사업)				424.7	129,919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보고서문, p.56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달빛고속철도 사업 노선 구간을 고속철도로 운행하는 경우 84분이 소요되는 반면,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운행한다고 가정시 86분이 소요되어 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며, 동 노선의 예상 여객 수요를 고려하는 경우 단선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철도 유형(고속철도/일반철도) 및 사업규모(복선/단선)에 따라 동 사

업에 따른 사업비 차이도 큰 것으로 보임. 예컨대, 제정안과 같이 복선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3안) 사업비는 11조 2,9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현행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바와 같이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경우 2022년 기준 사업비(1안)는 6조 429억원⁸⁾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철도 유형 및 사업규모에 따른 사업비 비교】

구 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7월)	1안 (고속화철도-단선)	2안 (고속화철도-복선)	3안 (고속철도-복선)
사업유형	일반철도	일반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
설계속도	250km/h	250km/h	250km/h	350km/h
사업규모	198.8km 단선전철	204.0km 단선전철	205.1km 복선전철	205.1km 복선전철
사업비	4조 5,158억원 (‘19년 기준)	6조 429억원 (‘22년 기준)	8조 7,110억원 (‘22년 기준)	11조 2,999억원 (‘22년 기준)
수송수요 (‘35년 기준)	-	주중 7.8천인/일 주말 9.7천인/일	주중 7.8천인/일 주말 9.7천인/일	주중 7.8천인/일 주말 9.7천인/일
운행시간	-	86.34분 (표정속도 149.9km/h)	86.34분 (표정속도 149.9km/h)	83.55분 (표정속도 153.63km/h)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에 제정안 심사 시에는 법률에서 동 사업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사업추진단계에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노선 철도를 “고속철도 또는 일반철도”로 건설할지의 여부와 “복선 또는 단선”으로 건설할지의 여부를 법 제정 단계에서 결정하는 경우 각 결정에 따라 이를 제정안의 제명, 목적 및 정의규정과 그 밖의 각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8) 다만, 동 수치는 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된 사업비로 물가상승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2년 기준으로 재추정된 사업비임.

있을 것으로 보임.

3) “철도 관리”는 “철도시설 관리”로 수정할 필요

제정안 제3조제2호는 “철도 관리”를 제정안의 제정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철도 관리”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철도시설 관리”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때 철도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⁹⁾에 따른 철도시설을 의미함.

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제4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토교통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달빛고속철도는 국유철도가 되며 이에 따라 재원부담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바, 지방자치단체를 재원 조달 의무 주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안 제5조 및 제6조)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정안은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을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취지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는 경우 제정안 제5조의 취지는 타당함.

제정안은 제6조에서 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검토시에는 철도 분야 법정계획의 위계적 질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달빛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우선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추가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달빛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특정한 사업의 건설을 위한 계획으로서, 개별 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상세한 노선 배치, 시설계획 및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하위 계획임.

반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므로, 보다 상위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보다 우선하는 것이 법정 계획 간의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뿐만 아니라, 항공 및 공항 분야¹⁰⁾의 상위 계획은

1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및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제2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지원 등

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제12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검토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제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제12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통상적으로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운용지침」¹¹⁾에 따라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1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정은 사업 시행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1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자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다만, 제정안의 경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위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임의조항을 입법할 필요성과, 현행의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근거에 따른 절차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는 방안 간의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재 철도 SOC 건설 분야에 있어 개별 노선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입법을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가 없는데, 제정안 통과 시 향후 위와 같이 유사한 개별 노선 사업에 대한 법 제정 요구가 증가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부처 의견 관련,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본법인 「국가재정법」과 별도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즉,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현행 국가재정법 규정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제정안 입법시 타지역 철도사업 등도 특별법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여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 단축 등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

를 규정한 유사입법례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¹²⁾,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¹³⁾이 있음.

각 법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나 면제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¹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¹⁶⁾,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¹⁷⁾이 있음.

1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5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사업(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정한다) 중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1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서 경쟁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4) 실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24개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3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하지 않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였음.

15)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6)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

세 법 모두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음.

2) 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중 검토 필요

제정안에서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다만,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경우 후술하는 제12조 검토 시에 살펴볼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이나, 그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이를 대체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 제12조에서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이 사업 내용, 규모 및 그 절차가 사전에 규정되지 않은 다소 모호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제정안 제7조에서 포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 부처 의견 관련, 기획재정부는 주변지역개발사업 등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규정은 제한적·열거적으로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상충된다고 보아 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주변지역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음.

나. 기본계획의 수립,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고속철도의 현황 분석 2. 달빛고속철도의 수요전망 3.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5. 고속철도의 시·종점 6.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7.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자원조달계획 8.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9.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진 대책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노선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정안 제8조는 달빛고속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시·종점” 용어 수정 필요

제정안 제8조제2항제5호는 기본계획이 고속철도의 “시·종점”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7호¹⁸⁾에서는 공사노선의 “기점과 종점”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시·종점”을 “기점과 종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 제8조제4항 지형도면 고시 규정 삭제 필요

제정안 제8조제4항 후단에서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¹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노선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지형도면의 고시를 할 필요가 없는바, 후단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1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1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3) 제정안 제8조제5항 기본계획 공람 규정 삭제 필요

제정안은 제8조제5항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⁰⁾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의 경우 노선계획, 정거장의 위치 등이 담겨 있어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도 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²¹⁾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여 전부 비공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8조제5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자구수정 필요

제정안 제8조제6항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보려는 취지임. 다만, 이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환경영향평가법」²²⁾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문언상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임.

2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 18. (생략)
- ② ~ ③ (생략)

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안 제9조 내지 제10조)

제 정 안
제9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2. 사업 구역 3. 자금조달계획 4. 건설사업 시행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본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철도사업 시행
규정 신설 필요

제정안은 제9조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 사업시행자에 의해 시행될 제도적 가능성도 있는바, 제정안 제9조에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철도건설법」 제8조제1항²³⁾에서는 위와 유사하게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실시계획은 “작성”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 필요

제정안은 제10조에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시계획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여 그 자체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 제10조의 제목,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수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를 “작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철도건설법」²⁴⁾ 또한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작성” 및

2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2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3) 인용 대상 수정 필요

제정안 제10조제4항은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실시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²⁵⁾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철도의 건설사업을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달빛고속철도 사업 또한 철도의 건설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25)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 18.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과 같이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언상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임.

라.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제 정 안

- 다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0.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지정 등 관련되는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제정안은 제11조에서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별 법률의 인·허가 등을 의제하려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지 않고 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타당함.

다만, 제정안 제11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철도건설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인·허가는 의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제정안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중에는 「철도건설법」에서는 의제되지 않는 인·허가가 포함되어있는바, 의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4호에 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49조에 따른 인·허가, 제10호에 규정된 「도로법」 제36조 및 제61조에 따른 인·허가, 제14호에 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제9조에 따른 인·허가, 제18호에 규정된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인허가, 제19호에 규정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인·허가, 제25호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인·허가 등의 경우 철도 건설사업과의 연관성이 적어 인·허가 의제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역세권개발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 조항을 제정안에서도 규정할지의 여부

한편, 제정안에는 철도건설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다만,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인·허가 또한 동 제정안에 따라 의제할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제2호에 규정된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6호에 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호에 규정된 「농지법」²⁶⁾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른 인·허가,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인허가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는 아니고, 「역세권개발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임.

다만, 후술하는 제정안 제12조 수정의견과 같이 달빛고속철도의 건설과정에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정안에 명시하는 경우, 철도 건설사업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닌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제정안에 별도로 명시할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임.

2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법」 제38조 인·허가 의제처리 조항도 규정되어 있으나, 동 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은 제외됨.

3) 관계부처 이견 고려 필요

일부 인·허가 의제 조항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제도와 비교시 혼선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개별 부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먼저, 제11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산지관리법」에서는 특정 목적의 사업이 있는 산지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한해 보전산지 해제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제정안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만으로 인·허가가 의제된다면 사업구역이 변경 및 취소될 때마다 보전산지 해제 등이 빈번해져 산지관리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산림청은 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구역에 한해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동 철도 노선이 보전산지지역을 통과할 지의 여부는 산지전용 등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향후 노선이 확정되는 설계단계에서 파악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둘째, 제정안은 제11조제3항에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27)에서는 행정기관 협의가 관할부대 내용 확인(7일), 현장확인 및 작전성 검토(7~10일), 심의회 준비 및 개최(7일), 협의 결과 통보(1~2일)

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
·허가 의제 조항에 의해 협의기간이 축소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임.

이에 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항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기타 자구 수정사항

한편, 제정안 제14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 제1항 및 제4항²⁸⁾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의 의제하고 있음. 이는 「철도건설법」 인·허가 의제처리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제될 필요가 있는 인허가이나, 인용 조항은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경관·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마. 주변지역개발사업(안 제12조)

제 정 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제12조에서 시·도지사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철도 역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개발법”) 이 이미 제정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역세권개발법에 따른 역세권이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주변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함.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 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가. 철도운행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이전·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이에 제정안의 제12조와 같이 “주변지역개발사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정안에 명시하고, 개발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인·허가 의제 등의 절차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특히, 제정안의 경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반경 3km)만 법률에서

정하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주변지역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법률상에서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예컨대 제정안에 따르는 경우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 절차, 사업계획 수립 절차, 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절차, 행위 등의 제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주변지역개발사업 실시 시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나 이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함.

이에 제정안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의 절차에 관한 고려나 법 체계적인 문제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주변지역개발사업이나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사업예정지역,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위 입법례는 공항 건설사업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해 규정하는 입법례인데, 공항의 경우 특정 부지에 공항이 조성되고, 그 주변지역을 해당 부지의 반경을 정하여 특정할 수 있으나, 철도의 경우 200km 가량의 노선을 따라 건설되는 선형 사업에 해당되고, 구체적인 철도 역사 등은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므로 법 제정 단계에서는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으로서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달빛고속철도건설 추진단(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제13조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달빛고속철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관계 법령에서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따르는 경우, 달빛고속철도건설 추진단의 설립 근거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임.

달빛고속철도건설 추진단의 설립 근거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들지 또는 개별법에 해당하는 동 제정안에 규정할 지의 여부는 법령 체계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 정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즉, 정부 조직의 통일적 관점에서 직제 개정을 통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도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개별법에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정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유사입법례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²⁹⁾ 및 「대구

29)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신공항 건립추진단) ①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2.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4.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5.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6. 가덕도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
7.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8.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9.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10. 그 밖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³⁰⁾에서는 별도의 추진단을 설치하기 위한 개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하였음.

3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
 - 가.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
 - 나.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다.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 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
 - 마.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 추진 및 관리
 - 바. 통합신공항 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 사. 통합신공항 건설 재원(財源) 마련 및 민간자본 유치 지원
 - 아.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공항시설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조성·관리 및 그 주변지역개발
 - 자.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홍보 및 대외협력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 ③ 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사. 재정지원(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재정지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정안 제14조는 국가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1) 사업유형에 따라 재정지원 주체 상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동 사업 유형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될지,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될 지의 여부에 따라 달리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법 제정 과정에서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유형이 일반철도 건설사업인지 고속철도 건설사업인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철도건설법」의 사례와 같이 모두 명시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 검토 필요

제정안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앞서 제정안 제12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변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동 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것보다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역세권개발법」 제26조³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아.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정안은 제15조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 제15조와 같이 부담금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인 「철도

건설법』에서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금 부담금 감면 규정을 규정한 바가 없음.

특히 국토교통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시 발생하는 부담금 등은 국고 부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금 감면에 대해 규정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관계 부처 또한 철도사업이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철도 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과대상³²⁾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생태 훼손 최소화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훼손한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생태계 복원 및 국방 목적 사업에만 부과 예외를 인정하므로, 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부담금 부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힘.

3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건축법에 따른 지목변경 수반 사업

아울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철
도 건설사업과는 무관하여 해당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자. 민간자본 유치 및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정안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용어 및 주관자 수정 필요

제정안은 제16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정안의 취지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민간투자법」을 인용하면서 민간투자³³⁾라는 용어를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사용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용하는 법률상의 용어와 동일하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민간투자법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주관하며 실행협약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므로, 민간투자 유치의 주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제정안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신중한 검토 필요

제정안은 제17조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제정안이 의미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정의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만일 제정안의 취지가 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달빛고속철도의 건설 자체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이는 제정안 제16조에 의해 사업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제17조에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의 민간자본유치사업이 ii) 도시개발사업³⁴⁾, 도시정비사업³⁵⁾,

34)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경우,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이란, 동 노선이 지나는 198.8km 정도의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모두에 대해 제정안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입법례는 「가덕도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구획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2)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1)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구획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나, 공항 건설의 경우, 철도 건설과는 다르게 특정 부지에서 이루어지므로 건설예정지역이 비교적 특정 가능하며 일정 지역 내로 제한된다는 차이가 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경지역에서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제1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조치에 관한 권한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조치를 할 것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차. 지역기업의 우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내지 제20조)

제 정 안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지역기업의 우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1) 지역기업의 우대(제정안 제18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동계약 운용요령」에서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소재한 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 ② (생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2.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다만 제정안 제18조에 지역기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경우 그 근거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제정안 제19조)

제정안 제19조의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 제한으로 인해 타지역 주민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공사수행에 있어서 비효율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기존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를 규정한 입법례로는 주로 군 공항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기피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되는 경우,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처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반면, 철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에 불이익을 주는 기피시설에 해당되는 측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철도는 면 사업인 공항과 달리 선형 사업에 해당되어 가능한 주거지역을 우회하여 건설되고, 대단위 이주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를 규정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3]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및 부지 면적의 제한 사항(제8조 관련)

1. 시설물 설치의 제한 사항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물(이하 "숙박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가.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제외한다)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은 그 취수지점의 상류방향의 경우 각각 유하거리 7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된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취수지점(공중이 이용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만 해당한다)

2. 부지면적의 제한 사항

업종	제한내용
가.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골프연습장업(실외 골프연습장업만 해당한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 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 및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 제20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골프장 내 숙박시설, 자동차경주장업, 골프장연습장업, 썰매장업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철도사업이 건설되는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위와 같이 부지면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한 유사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지역에 골프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음.

다만, 제정안 제20조에 대하여는 선로 위주의 소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이루어지는 철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철도 사업의 경우 공항과 같이 대규모의 부지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지 면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또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 과정에서 체육 시설의 설치 등 유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역세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³⁶⁾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둔 유사 입법례가 있음.

3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공항건설예정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항의 경우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³⁷⁾ 및 「공항시설법 시행령」³⁸⁾ 제3조제2호마목 등에서 공항시설의 범위에 “공항 이용객을 위한 운동 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항시설 설치시 대단위의 부지가 조성되어 대형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철도사업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37)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8. ~ 20. (생략)

38)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 라. (생략)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탁·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 카. (생략)

3. ~ 6. (생략)

6. 제3장 보칙

가. 보고·검사 등, 시정명령 등, 처가 등의 취소 등(안 제21조 내지 제23조)

제 정 안
제3장 보칙
제21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제21조에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철도건설법」 제40조³⁹⁾의 입법례와 유사함. 다만, 「철도건설법」의 경우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제22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동 제정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관련된 허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제23조에서 “허가 등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제정안에서는 별도로 사업 시행을 위한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허가”를 “승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과징금의 부과, 청문 및 권한의 위임 등(안 제24조 내지 안 제26조)

제 정 안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제 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징금 제도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를 일컫음⁴⁰⁾.

제정안 제24조에서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철도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 과징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40)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2019, p.422

먼저, 「철도건설법」 41)상 과징금 규정은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 정기 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미실시, 조치명령 미이행, 안전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금전상의 제재

4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를 대신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철도시설이 “운영”되면서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처분임.

반면, 동법은 철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 철도를 “건설”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인데, 철도 건설 단계에서 실시계획 승인 정지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재설계 및 재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며, 과징금 처분을 바탕으로 공사나 영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임. 이러한 설명에 따를 때,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둘 실익이 적은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안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불이익한 처분 전에 처분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6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임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제4장 벌칙 및 부칙

가. 명령 등의 위반죄,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 양벌 규정 등(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제 정 안
제4장 벌칙 제2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28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제4장에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제정안의 벌칙 규정은 철도건설에 관한 일반법인 「철도건설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

측면이 있고, 이에 해당 벌칙을 「철도건설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철도건설법과 유사 조문 비교 >

제정안		철도건설법	
처벌수준 (처벌조항)	대상	처벌수준 (처벌조항)	대상
징역(1년↓) 또는 벌금(1천만원↓) (제27조제1호, 2호)	사업시행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한 자	과태료(300만원↓) (제47조제4항제1 호)	사업시행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토지 출입을 방해한 자
	착공지연, 설계서와 시설물 상이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벌금(300만원↓) (제45조제4항)	허위로 승인, 사업 곤란 등에 따른 승인 취소,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한 자
벌금(2천만원↓) (제28조)	준공 고시 전 철도시설 및 부지 등을 사용한 자	해당 없음	준공 고시 전 철도시설 및 부지 등을 사용한 자
벌금(500만원↓) (제29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업무 검사 등을 거부한 자	과태료(300만원↓) (제47조제4항제2 호)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업무 검사 등을 거부한 자

※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국

먼저, 제정안은 제27조에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⁴²⁾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정안 제22조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⁴³⁾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

4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흙·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43) 제4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건설 단계에서의 시정명령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⁴⁴⁾하고 있음.

다음, 제정안은 제28조에서 「철도건설법」 제16조제4항⁴⁵⁾을 위반하여 준공 고시 전 철도시설 및 부지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철도건설법」에서는 철도 시설 불법 사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있지 않음.

셋째로, 제정안은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의 업무방해 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철도건설법」⁴⁶⁾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4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제정안에서는 제20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정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양벌 규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벌칙의 형량의 적절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 (조오섭위원) 동 제정안이 통과되어 동서화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동 제정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조항을 삭제하거나 신속예타 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조율할 필요
- 해당 제정안은 헌정 사상 최대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점과, 국토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할 필요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됨.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제정안 제11조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협의 요청 후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상기 사항을 규정(2023년 3월 시행)⁴⁷⁾하고

47)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

있는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되, 다른 내용(행정기본법은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20일로 규정한 반면, 동 제정안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0일로 규정)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1부

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가.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함(제명 및 제정안).
- 나. 달빛철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임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기본 방향에서 “복선화” 부분을 삭제함(안 제3조제1호).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반영을 위한 노력 의무를 삭제함(안 제 4조제2항).
- 마.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우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3호).
- 바. 주변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 사.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8조).
- 아.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
- 자.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에 의제되는 인·허가를 정비함(안 제11조).

- 차. 주변지역개발사업 유형을 삭제하고,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카.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설치 근거규정, 부담금 등의 감면, 민간자본 유치,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규정,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시정명령 등, 과징금의 부과 규정,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업무방해 죄를 삭제함(안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 타. “허가 등의 취소 등”을 “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규정으로 수정함(안 제16조).
- 파.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신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한다.

안 제1조 중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을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로, “고속철도의”를 “철도의”로,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을 “국토의 균형발전 및”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을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로, “제2조제2호에”를 “제2조제4호에”로, “고속철도를”을 “일반철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달빛철도 건설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한다.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달빛고속철도를”을 “달빛철도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복선화 및 첨단화”를 “첨단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철도 관리”를 “철도시설 관리”로 하고, “고속철도의”를 “철도의”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를 “국가는 달빛철도”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본문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안 제2장의 제목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한다.

안 제7조 중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제12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사업의”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고속철도”를 “철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를 “기본계획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6항) 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로 한다.

1.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안 제9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달빛고속철도”를 각각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달빛

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중 “수립·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따른 달빛고속철도”를 “따른 달빛철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빛고속철도”를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수립, 승인”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중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본다.”를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제10조제3항에”를 “제10조제2항에”로 하고, 제11조제1항의 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4호, 제17호,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24

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중전의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를 삭제한다.

인 제18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4조(중전의 제18조) 중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를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로 한다.

안 제19조 및 제20조를 삭제한다.

안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보칙

안 제21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5조(중전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달빛고속철도”를 각각 “달빛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6조(중전 제2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안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제17조(중전의 제25조)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16조제1항에”로 한다.

안 제18조(중전의 제26조) 중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로,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로 한다.

안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벌칙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9조 및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3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1조(중전의 제30조) 본문 중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를 “제19조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u>달빛고속철도</u> 건설을 위한 특별 법	<u>달빛철도</u>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대구광역시</u> <u>와 광주광역시를</u> 연결하는 <u>고</u> <u>속철도의</u> 신속한 건설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국토</u> <u>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u> <u>구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u> <u>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광주광역시</u> <u>와 대구광역시를</u> ----- <u>철</u> <u>도의</u> ----- ----- <u>국토의 균</u> <u>형발전 및</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u>달빛고속철도</u> ”란 <u>대구광역</u> <u>시와 광주광역시를</u> 잇기 위 해 건설되는 「 <u>철도의 건설</u> <u>및 철도시설 유지관리</u> 에 관 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u>고속철도</u> 를 말한다.	1. -- <u>달빛철도</u> ----- <u>광주광역시</u> <u>와 대구광역시를</u> ----- ----- ----- ----- <u>제2조제4호에</u> ----- <u>일</u> <u>반철도</u> 를-----.
2. “ <u>달빛고속철도 건설</u> ”이란 <u>달</u> <u>빛고속철도</u> 건설을 위한 다 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2. -- <u>달빛철도 건설사업</u> ----- ----- <u>달빛철도</u> ----- ----- -----. 가. ~ 마. (원안과 같음)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제3조(기본방향) ----- -----

방향으로 달빛고속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복선화 및 첨단화 추진

2. 철도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

3.4.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달빛철도를-----
-----.

1. -----

-----첨단화-----

2. 철도시설 관리-----

-----철도의-----

3.4. (원안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달빛철도-----

-----.

② 국가는 달빛철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달빛철도-----

-----.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
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2. (생 략)

<신 설>

제2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지 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
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
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제12
조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

② 달빛철도-----

-----.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
-----달빛철도-----

-----.

-----.

1.2. (원안과 같음)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
한 특례) -----달
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고속철도의 현황 분석
2. 달빛고속철도의 수요전망
3. 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생략)
5. 고속철도의 시·종점
6. ~ 11.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내용 중 노선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달빛철도-----

-----.

② -----
-----.

1.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삭 제>
2. 철도-----

3. (원안 제4호와 같음)
<삭 제>
4. ~ 9. (원안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삭 제>

변경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⑥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

③ -----기본계획의-----

-----＜후단 삭제＞

＜삭 제＞

④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단서 신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달빛철도

-----.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

-----따른 달빛철도-----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2. 사업 구역
3. 자금조달계획
4. 건설사업 시행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

-. -----달빛
철도-----

-----.

<삭 제>

② -----승인-----

-----.

③ -----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
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생략)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5.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물의 건축 협의

3. (원안과 같음)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5. (원안과 같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생략)

7. (원안과 같음)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생략)

9. (원안과 같음)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 13. (생략)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립·벌채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생략)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

것으로 한정한다)

11. ~ 13. (원안과 같음)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원안과 같음)

<삭 제>

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17. (생 략)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
천 점용의 허가

19.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
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0. ~ 24. (생 략)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

16. (원안 제17호와 같음)

<삭 제>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 ~ 22. (원안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
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
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설치·신고

26.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
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
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
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
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
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
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원안 제26호와 같음)

② -----
-----제2항에-----

-----.

③ -----

-----30일-----

-----.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시·

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
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
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
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
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주변개발예정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
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
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
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
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
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
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
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법인·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국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 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용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할 수 있다.

②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

<삭 제>

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6조(민간자본 유치)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빛고속철
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
본을 유치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삭 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달
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
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
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
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

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

<삭 제>

<삭 제>

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1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

제3장 보칙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

-----달빛철도-----

-----달빛철도-----

-----.

②-----달빛철도-----

-----.

③ -----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

-----국토교통부령으로-----
-----.

<삭 제>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

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등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5.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제2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삭 제>

② · ③ (원안과 같음)

<삭 제>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7조(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7조(청문) -----

제16조제1항에-----

-----.

제1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제4장 벌칙

<삭 제>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
한 자

제28조(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의 죄)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
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제29조(업무방해 죄)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
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
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
항에 따라 준용하는 「철도

	<u>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u> 2. <u>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u>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u>	<u>제21조(양벌규정)</u> ----- ----- ----- ----- -- <u>제19조에</u> ----- ----- ----- ----- -----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철도”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잇기 위해 건설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2. “달빛철도 건설사업”이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

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 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철도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과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장 달빛철도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2. 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제9조(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 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7.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8.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

가 또는 협의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12조(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달빛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

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19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